

문서번호	시설안전1팀-6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6.01.05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환경안전본부장	사장
			01/05
고정일	박성규	임태빈	박현출
협 조	팀장 팀장 팀장 팀장 팀장		김진중 윤덕인 신장식 임영규 권기태
감 사	감사실		감사실

가락시장 비가림시설(중앙,농협,서울,한국청과) 설치계획(안)

2016.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시설안전1팀

가락시장 비가림시설(중앙,농협,서울한국청과) 설치계획안

목적

- 외기(우천,직사광선)로부터 농산물 보호를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 농산물 상품성 유지를 통한 안심먹거리 제공, 도매시장경쟁력 강화

1. 관련근거

- 가. 시설안전1팀-3836호(2015.12.24.) “2015년도 제3차 가설건축물 심의회 결과 보고”
- 나. 시설안전1팀-31호(2016.1.4.) “2016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 심의회 결과 보고”

2. 비가림시설 설치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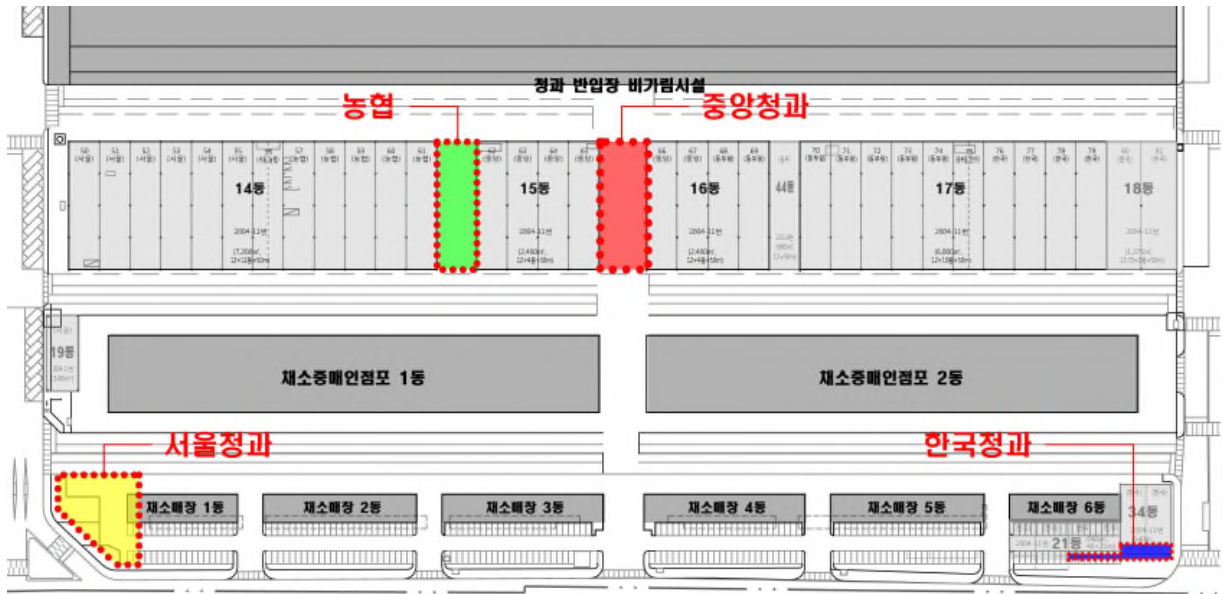
가. 대지현황

- 대지 소유자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 대지위치(지목)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垆)

나. 비가림시설 신축 개요

구 분	2015년도 제3차		2016년도 제1차	
	의안 제4호	의안 제5호	의안 제1호	의안 제2호
○ 건축주	(주)중앙청과	농협경제지주	서울청과(주)	한국청과(주)
○ 건축면적	925.00㎡	775.00㎡	922.44㎡	140.62㎡
○ 연면적	925.00㎡	775.00㎡	922.44㎡	140.62㎡
○ 대지사용 승인면적	925.00㎡	775.00㎡	922.44㎡	140.62㎡
○ 층수	1층	1층	1층	1층
○ 설치구조	철골조립식	철골조립식	철골조립식	철골조립식
○ 설치용도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다. 설치 위치



3. 가설건축물 심의회 결과

가. 심의회 실시 개요

구 분	2015년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시설안전1팀-3836호)	2016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 심의회 (시설안전1팀-31호)
일 시	2015년 12월 23일	2016년 1월 4일
장 소	시설안전팀 회의실	서면결의
심의의원	환경안전본부장 외 5인	환경안전본부장 외 7인
소관부서	물류개선팀	물류개선팀
심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 제4호 (쭈중앙청과 비가림시설) 의안 제5호 농협경제지주 비가림시설 의안 제6호 서울청과(쭈) 비가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 제1호 서울청과(쭈) 비가림시설 의안 제2호 한국청과(쭈) 비가림시설
심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 제4호 : 원안 승인 의안 제5호 : 원안 승인 의안 제6호 : 심의 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안 제1호 : 원안 승인 의안 제2호 : 원안 승인

나. 승인 조건

○ 2015년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의안 제4호(중앙청과)	의안 제5호(농협경제지주)
<p>가. 특기사항(공증각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청과와 중앙청과 중도매인이 남북통로 원활한 소통 유지. 경매장 이용시간 외 시장이용고객 주차장 및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물 정리토록 할 것 ② 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 철거 필요시 별도의 대체부지를 요구치 않을 것 ③ 금회 승인된 비가림시설 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시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유익비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 ④ 영업 한계선 설정 및 도색, 경매 후 주차 금지 유도봉 설치할 것 ⑤ 상주 법인 직원 배치 : 무단 적치물 및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신규영업자 발생 단속할 것 <p>나.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락시장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우리공사 사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 운영, 철거토록 한다. ② 우리공사 사규에 따른 가설건축물 심의 요청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한 설계도 	<p>가. 특기사항(공증각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가림시설물 내 영업시간 준수. 경매장 이용시간 외 시장이용고객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물 정리토록 할 것 ② 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 철거 필요시 별도의 대체부지를 요구치 않을 것 ③ 금회 승인된 비가림시설 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시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유익비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 <p>나. 공통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左同 -</p>

의안 제4호(중앙청과)	의안 제5호(농협경제지주)
<p>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토록 할 것</p> <p>③ 송파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토록 할 것</p> <p>④ 공사에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p>⑤ 시설공사 착공전 우리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하고, 송파구청에서 발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첨부할 것</p> <p>⑥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할 것</p> <p>⑦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토록 할 것</p> <p>⑧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물류개선팀)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신고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 左同 -</p>

○ 2016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의안 제1호(서울청과)	의안 제2호(한국청과)
<p>가. 특기사항(공증각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가림시설물 내 영업시간 준수, 경매장 및 물류기기 충전·보관 용도로만 활용할 것 ② 금회 승인된 비가림시설 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시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유익비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 ③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 철거 필요시 별도의 대체부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 ④ 서울청과(주)는 무단 영업중인 노점상 등 무허가상인을 비가림시설 구역에서 정비할 것 ⑤ 채소중도매인점포 도로 통로 확보를 위하여 18:00~09:00까지 질서(교통) 관리자를 배치할 것 <p>나.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락시장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우리공사 사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 운영, 철거토록 한다. 	<p>가. 특기사항(공증각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가림시설물 내 영업시간 준수, 경매장 및 물류기기 충전·보관 용도로만 활용할 것 ② 금회 승인된 비가림시설 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시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유익비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 ③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 철거 필요시 별도의 대체부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 ④ 채소경매장과 남1문 사이 도로 통로 확보를 위하여 18:00~09:00까지 질서(교통) 관리자를 배치할 것 ⑤ 비가림시설 복구 및 신축에 따른 서울메트로 업무협의 사항 준수할 것 ⑥ 비가림시설 기둥 중심선은 가락시장 외곽울타리에서 1m이상 이격하고 처마끝선은 외곽울타리에서 이격하여 시장부지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처마낙수물이 비산하지 않도록 홈통을 설치할 것. 그리고 지하철구조물과 간섭구간에서는 지하철구조물에서 1.2m 이격하여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비가림시설 구조물과 비가림시설에서 흘러내리는 낙수물이 사이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것 <p>나. 공통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左同 -</p>

의안 제1호(서울청과)	의안 제2호(한국청과)
<p>② 우리공사 사규에 따른 가설건축물 심의 요청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한 설계도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토록 할 것</p> <p>③ 송파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토록 할 것</p> <p>④ 공사에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p>⑤ 시설공사 착공전 우리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하고, 송파구청에서 발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첨부할 것</p> <p>⑥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할 것</p> <p>⑦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토록 할 것</p> <p>⑧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물류개선팀)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신고할 것</p>	<p style="text-align: center;">- 左同 -</p>

의안 제4호(중앙청과)	의안 제5호(농협경제지주)
<p>가. 특기사항(공증각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앙청과와 중앙청과 중도매인이 남북통로 원활한 소통 유지. 경매장 이용시간 외 시장이용고객 주차장 및 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물 정리토록 할 것 ② 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 철거 필요시 별도의 대체부지를 요구치 않을 것 ③ 금회 승인된 비가림시설 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시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유익비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 ④ 영업 한계선 설정 및 도색, 경매 후 주차 금지 유도봉 설치할 것 ⑤ 상주 법인 직원 배치 : 무단 적치물 및 주정차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및 신규영업자 발생 단속할 것 <p>나. 공통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락시장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우리공사 사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 운영, 철거토록 한다. ② 우리공사 사규에 따른 가설건축물 심의 요청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위한 설계도서는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토록 할 것 ③ 송파구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토록 할 것 	<p>가. 특기사항(공증각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가림시설물 내 영업시간 준수. 경매장 이용시간 외 시장이용고객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물 정리토록 할 것 ② 현대화사업에 따른 비가림시설 철거 필요시 별도의 대체부지를 요구치 않을 것 ③ 금회 승인된 비가림시설 면적은 시설현대화사업시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이에 따른 유익비 등을 주장하지 않을 것 <p>나. 공통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左同 -</p>

의안 제4호(중앙청과)	의안 제5호(농협경제지주)
<p>④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의 건축공사와 가스공사 또는 전기공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의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p>⑤ 시설공사 착공전 우리공사에 착공계를 제출토록 하고, 송파구청에서 발부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첨부할 것</p> <p>⑥ 가설건축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설치자가 부담할 것</p> <p>⑦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을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을 철거토록 할 것</p> <p>⑧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물류개선팀)의 확인을 받아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송파구청에 존치기간 연장신고할 것</p>	

4. 행정 사항

○ 2015년도 제3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의안 제4호(중앙청과)	의안 제5호(농협경제지주)
가.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1팀)	가.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1팀)
나. 가설건축물 승인 조건에 대한 법적 이행 담보 방안 강구 (물류개선팀)	나. 가설건축물 승인 조건에 대한 법적 이행 담보 방안 강구 (물류개선팀)
다. 대지사용승낙서 발급(물류개선팀→중앙청과)	다. 대지사용승낙서 발급(물류개선팀→농협)
라. 관할구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중앙청과)	라. 관할구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농협)
마. 착공계 제출(중앙청과→시설안전1팀)	마. 착공계 제출(농협→시설안전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바. 시공관리(시설안전1팀)	바. 시공관리(시설안전1팀)
사. 준공계 제출(중앙청과→시설안전1팀)	사. 준공계 제출(농협→시설안전1팀)
아. 가설건축물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중앙청과)	아. 가설건축물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농협)
자.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물류개선팀)	자.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물류개선팀)

○ 2016년도 제1차 가설건축물심의회

의안 제1호(서울청과)	의안 제2호(한국청과)
가. 서울메트로 업무협약(서울청과→서울메트로)	가.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1팀)

의안 제1호(서울청과)	의안 제2호(한국청과)
<p>나.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사장승인방침 수립(시설안전1팀)</p> <p>다. 가설건축물 승인 조건에 대한 법적 이행 담보 방안 강구 (물류개선팀)</p> <p>라. 공사부지내 자산 처리(시설안전1팀→재무팀)</p> <p>마. 대지사용승낙서 발급(물류개선팀→서울청과)</p> <p>바. 관할구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울청과)</p> <p>사. 착공계 제출(서울청과→시설안전1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p>아. 시공관리(시설안전1팀)</p> <p>자. 준공계 제출(서울청과→시설안전1팀)</p> <p>차. 가설건축물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서울청과)</p> <p>카.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물류개선팀)</p>	<p>나. 가설건축물 승인 조건에 대한 법적 이행 담보 방안 강구 (물류개선팀)</p> <p>다. 대지사용승낙서 발급(물류개선팀→한국청과)</p> <p>라. 관할구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한국청과)</p> <p>마. 「지하철 3호선 환기구 및 피난계단」 지하철 구조물에 대한 사전합동조사 실시(한국청과→시설안전1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입회 <p>바. 착공계 제출(한국청과→시설안전1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 설계도서 • 공사도급계약서 <p>사. 시공관리(시설안전1팀)</p> <p>아. 준공계 제출(한국청과→시설안전1팀)</p> <p>자. 가설건축물 제세공과금 신고 및 납부(한국청과)</p> <p>차. 가설건축물 승인조건 이행확인(물류개선팀)</p>

- 붙 임 : 1. 가설건축물 심의회 결과보고 2부
 2. 이행확인서 4부
 3. 도면 4부
 4. 이행각서 4부. 끝.